

소아청소년(12~17세)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사전예약 안내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

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소아청소년의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여 예방접종의 이득이 커짐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는 당일 현장접종과 별개로, 희망하는 일자에 미리 예약하여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예약을 추가 실시한다고 하오니,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예약하여 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<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 사전예약 안내>

■ 추가 사전예약 대상	① 미예약 12-17세 소아청소년 ② 예약일자가 지났으나(11.21일 기준) 접종받지 않은 12-17세 소아청소년
■ 추가 사전예약 기간	'21.11.23.(화) 20시 ~ '21.12.31.(금) 18시
■ 추가 1차 접종 기간	'21.11.29.(월) ~ '22.1.22.(토)

예약 시기별 예약가능 접종일		*변동가능						
예약시기	접종일	11.29(월) ~ 12.5(일)	12.6(월) ~ 12.12(일)	12.13(월) ~ 12.19(일)	12.20(월) ~ 12.26(일)	12.27(월) ~ 1.2(일)	1.3(월) ~ 1.5(수)	1.6(목) ~ 1.22(토)
12-17세 미예약자	11.23.(화) 20:00~ 11.24.(목) 24:00	●	●	●	●	●	●	●
	11.25.(목) 00:00~ 11.30.(화) 24:00		●	●	●	●	●	●
	12.1.(수) 00:00~ 12.7.(화) 24:00			●	●	●	●	●
	12.8.(수) 00:00~ 12.14.(화) 24:00				●	●	●	●
	12.15.(수) 00:00~ 12.21.(화) 24:00					●	●	●
	12.22.(수) 00:00~ 12.28.(화) 24:00						●	●
	12.29.(수) 00:00~ 12.31.(금) 18:00							●

- 접종절차: 예약 기간 중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(<https://ncvr.kdca.go.kr>) 접속 또는콜센터 (1339, 지자체) 전화 예약(대리예약 가능) 후 개별적으로 접종기관 방문하여 접종
- 접종 시에는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동행하여야 하며, 불가피하게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보호자(법정대리인)가 작성한 접종 시행 동의서와 예진표(붙임2)를 접종대상자(학생)가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※ 접종 시 신분증을 개인별로 지참
- 유의사항: 보호자는 예방접종 안내문(붙임1) 등에 포함된 이상반응, 예방접종 전·후 주의사항 등을 사전에 반드시 잘 숙지하시기 바라며, 접종 후 3일 간 건강상태를 유의 깊게 관찰하고, 일주일 간은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을 자제하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람

2021. 11. 29.

전 주 오 송 초 등 학 교 장

불임 1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예방접종 안내문 - 12~17세 소아청소년용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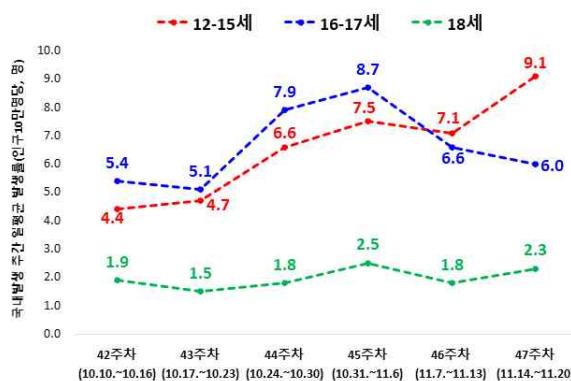
○ 소아청소년(12~17세)에게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백신은 무엇인가요?

백신제품	허가 연령	권고 연령	접종횟수	접종권고간격
화이자 社	12세 이상	12세 이상	2회	21일

* 핵산 백신(mRNA)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몸에 주입하여 체내에서 표면항원 단백질을 생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합니다. 생백신이 아니므로 백신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지 않습니다.

○ 백신을 왜 맞아야하나요?

- ▶ 전염력이 높은 **델타 변이가 유행하고,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**으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**소아청소년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고, 실제 소아청소년 발생이 계속해서 증가**하고 있습니다.
- * 미국, 일본, 캐나다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 중



구분	12-17세	전연령
7월	확진자 2,151(76.3)	39,397(76.0)
	위중증자 1	123
	사망자 -	840
8월	확진자 3,050(108.2)	51,424(99.2)
	위중증자 1	212
	사망자 -	1,074
9월	확진자 3,604(127.9)	58,976(113.8)
	위중증자 2	240
	사망자 -	856
10월	확진자 4,813(171.8)	52,765(101.8)
	위중증자 5	377
	사망자 -	950

<그림>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률(21.11.22.기준) <표>연령별 월별 확진자, 사망자, 위중증자 현황(21.11.19.기준)

- ▶ 현재 소아청소년 집단은 **접종률이 낮아 유행 차단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감염이 쉽게 확산**될 수 있습니다. 특히, 소아청소년은 **무증상 감염**이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, 가정 및 또래집단 등에서 감염이 상당히 **확산된 이후에 발견**되고 있습니다.

* (11월 1-2주) 교육시설(47건, 28.3%), 사업장(37건, 22.3%), 의료기관/요양시설(35건, 21.1%) 순으로 집단감염 발생

- ▶ 코로나19 감염으로 **입원, 위중증**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고, **격리 및 등교중지**에 따른 **학습권의 침해,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**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다양하고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- ▶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 감염예방에 효과적이므로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.

⇒ 델타 변이 확산, 거리두기 완화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최근 들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하여 **예방접종의 이득이 더욱 커지고** 있습니다.

○ 꼭 맞아야하는 대상이 있나요?

- ▶ 소아당뇨, 비만 등 내분비 질환, 심혈관 질환, 만성신장질환, 만성호흡기질환, 신경계질환, 면역저하자 등 **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**의 경우 건강한 청소년보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**예방접종이 적극 권고**됩니다.

- ▶ **건강한 소아청소년도**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**중증 감염**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**합병증**을 **예방**할 수 있으므로, 예방접종의 이득과 코로나19 감염 및 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위험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**예방접종**을 받으실 것을 **권고**합니다.

○ 백신이 효과적인가요?

- ▶ **국내 고등학교 3학년** 접종자 대상 분석에서 **감염예방효과는 95.8%**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.

- ▶ 18세 이하에서 **접종완료군**에서 **입원율, 중환자 발생률**이 미접종군에 비해 **매우 낮게** 나타났습니다.

* 최근 2주(21.10.24.~11.6.) 12~17세 확진자는 3,001명으로 이 중 98.7%(2,961)가 미접종자이며, 완전접종자는 1명임. 위중증 환자는 2명이며 모두 미접종자임, 사망자는 없음

- ▶ **미국**에서도 백신 미접종 대상군에서 입원율이 백신완료군에 비해 10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**중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**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○ 백신은 안전한가요?

- 식약처 허가사항에 의하면, 소아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의 안전성은 성인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국내 고등학교 3학년 접종 결과(21.7.19~9.25), 이상반응 신고(신고율 0.45%)의 대부분은 두통, 발열, 메스꺼움 등 일반 이상반응(97.6%)이며, 심근염·심낭염은 15건 보고되어 모두 회복(10건 입원, 5건 외래)되었습니다.
- 현재 진행 중인 국내 12-17세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 신고(11.14. 0시 기준 신고율 0.24%) 역시 대부분 일반 이상반응(98.2%)이며, 아나필락시스 의심이 24명이었고 심근염·심낭염 의심 신고가 3건 있었으며, 사망사례 보고는 없었습니다.
- 미국에서는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/심낭염 발생 보고가 있으며, 특히 12~15세에서 mRNA 백신 2차 접종 후 수일 이내 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 경증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전·후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?

접종 전

- 건강상태가 좋을 때, 접종하기
- 다음과 같은 경우 예방접종 연기하기
 -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
 - 격리 중인 코로나19 환자 및 접촉자
 - 발열(37.5°C 이상)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
 - 1차 mRNA 코로나19 백신(화이자) 접종 후 심근염/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



접종 후

- 접종 후 15~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무르며 이상반응 발생여부 관찰하기
- 귀가 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일주일 정도는 고강도의 운동 및 활동 자제하기
-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기
-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 받기

단! 다음과 같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!

-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*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
 - 1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, 첫 번째 백신과 동일 플랫폼의 백신으로 접종 금기
- * 아나필락시스 호흡곤란, 얼굴의 부기, 눈 또는 입술/입안의 부종, 몸 전체의 발진, 빠른 심장 박동, 현기증, 쇼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
★ 약(장 세척제 등), 화장품, 음식, 다른 종류의 백신 등에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예진표에 기록해 주세요★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?

-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, 발적, 발열, 피로감, 두통, 근육통, 오한,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음
- 호흡곤란, 얼굴의 부기, 눈 또는 입술/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
- mRNA 백신(화이자, 모더나) 접종 후 가슴 통증, 압박감, 불편감, 호흡곤란이나 숨가쁨, 호흡시 통증,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, 실신 증상이 나타나는 심근염·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음

○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?

- 접종부위 부기, 통증이 있는 경우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위에 냉찜질 하기
- 미열이 있는 경우,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기
- 발열이나 근육통 등으로 불편함이 있는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기

* 예방접종 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 준비, 예방접종 후 몸살 증상이 나타날 경우 해열진통제 복용
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

- 가슴통증, 압박감, 불편감, 호흡곤란이나 숨가쁨, 호흡시 통증,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두근거림, 실신 등이 새롭게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지속되는 경우
 - 접종부위의 통증, 부기, 발적이나 발열 등이 접종 후 2일이 지나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는 경우
 - 접종 후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
-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세요
 - 숨쉬기 곤란하거나 심하게 어지러운 경우, 입술·얼굴이 붓거나 온몸에 심한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

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될 경우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라며,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<https://nip.kdca.go.kr>) 내 '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'에서 이상반응과 대처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불임 3

접종 시 지침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

□ 신분증 관련 안내사항

※ 부총리-질병관리청장 정례회의(10.13.) 관련

< 현행 지침 상 신분증의 범위 >

- ① 기간 만료 전 여권
- ② 유효기간 내 청소년증 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
 - *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며, 법정대리인 등의 대리 발급도 가능
- ③ 학교생활기록부 개인 신상 페이지(학교장 확인 필요)
 - * 나이스 대국민서비스(www.neis.go.kr)를 통해 가정에서 발급 가능
- ④ 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
- ⑤ 기타 학생증, 재학증명서 등 사진이 부착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된 신분증

○ 참고 내용

- ¹⁾보호자 동반 시 신분증 없어도 되는지, ²⁾주민등록번호 아닌 생년월일만 표시되어도 가능한지, ³⁾동의서·예진표 사본으로 제출 가능한지, ⁴⁾생활기록부 출력·활용 시 학교장 직인 생략 가능한지

→ (질병관리청 최종 검토결과) 오접종 및 부정접종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 절차 필수불가결하여 요건에 맞는 신분증 제시 필요*. 다만 보호자 미동반 시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·예진표는 제한적**으로 사본 허용

* 실제 주민등록번호 미확인으로 동명이인 오접종 발생 사례 있음

** (예시) 작성내용과 보호자 서명이 분명히 확인되고, 위조여부를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경우 등